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제정	1972. 3. 9.	대통령령	제 6,106 호
개정	1974. 7.29.	대통령령	제 7,214 호
개정	1977.10. 6.	대통령령	제 8,717 호
개정	1978. 4.19.	대통령령	제 8,957 호
개정	1979. 2.10.	대통령령	제 9,319 호
개정	1980. 3.31.	대통령령	제 9,827 호
개정	1981. 2.28.	대통령령	제 10,216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 114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이하 “ 통신대학 ” 이라 한다) 의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 수업년한 및 자격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통신대학은 서울대학교에 부설한다.

제 3 조 (과정) 통신대학은 5 년의 학사과정과 2 년의 전문대학과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 4 조 (학과) 통신대학에 가정학과, 경영학과, 초등교육과, 농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제 5 조 (학생 정원) ① 통신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과 학년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 (공무원의 정원) 통신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장 및 학과장) ① 통신대학의 학장은 서울대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서울대학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대학대학교 총장 (이하 “ 총장 ” 이라 한다) 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보한다.

②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제 4 조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

제 8 조 (하부조직) ①통신대학에 교학과, 방송교육과와 학사관리과를 둔다.

②교학과장과 방송교육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하고, 학사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학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의 설치, 폐지
2. 교재의 편찬과 교육과정
3. 서면지도, 출석지도 및 과외지도
4. 시험성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협력학교조정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④ 방송교육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계획수립 및 방송실시
2. 방송교재작성
3. 녹음실관리

⑤학사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관리 및 교재배부
2. 예산결산회계,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3. 등록, 수료, 졸업, 휴학, 복학, 퇴학등 일반학적에 관한 사항

4. 각종 증명 발급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9 조 (자문위원회) ①통신대학의 운영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신대학에 방송통신대학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신대학학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10 조 (협력학교) ①통신대학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협력학교를 둔다.

②협력학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한다.

③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이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통신대학의 교육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입학자격) 통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기타 문교부장관이 전 각호의 1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12 조 (수업방법) 통신대학의 학생은 배부된 교재와 방송에 의하여 학습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협력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교육과정) 통신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이수학점) 통신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은 학사과정은 160 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과정은 8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성적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와 과제제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학기말 출석수업중에 실시한다

제 16 조 (졸업 및 학위) ① 통신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4년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통신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17 조 (방송통신교육연구소) ① 통신대학에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교재개발등 전문적인 사항을 연구·개발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교육연구소를 둔다.

②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18 조 (편입학) 통신대학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통신대학의 교육을 위한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중인 통신대학 학생의 협력학교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강사료) 통신대학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납입금) ①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문교령으로 정한다.

②학장은 제 1 항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 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974. 7. 29 대통령령 제 7214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의 규정은 1975 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10.6 대통령령 제 871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4.19 대통령령 제 895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1978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2.10 대통령령 제 9319 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7 조의 규정은 1979 학년도에 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3.31 대통령령 제 982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2.28 대통령령 제 10216 호)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 관 별 입 학 및 학 년 정 원

학 과 명	입학및학년정원	학 과 명	입학및학년정원
가 정 학 과	5,000	초 등 교 육 과	5,000
경 영 학 과	8,500	행 정 학 과	7,500
농 학 과	4,000	계	30,000